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67
----------	------

제출일자 : 2025.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에 대하여 인용조문 및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달성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조문 및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조문 변경 : 「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등
- 명칭 변경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25. 8. 28.)에 따른
“유원시설업” → “테마파크업”으로 변경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동물보호법」, 「혈액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25. 10. 30. ~ 11. 19.)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과 명칭을 자치법규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조례를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8조”를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3조(「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를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2제5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확인등)란의 제6호(5)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 종합유원시설업”을 “· 종합테마파크업”으로, “· 일반유원시설업”을 “·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호 (6)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 종합유원시설업”을 “· 종합테마파크업”으로, “· 일반유원시설업”을 “·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호 (7) 및 같은 호 (8)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각각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호 (9)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제2항제3호(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학대행위금지)”을 “제1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3제2항”으로 한다.

제9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제136조”를 “제15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 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 ----- ----- ----- -----.</p>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9조제1항----- ----- ----- ----- -----.</p>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7조-----</p>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조제6항-----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 5. (생 략) 6. 문화체육관계 (1) ~ (4) (생 략) (5) <u>유원시설업</u> 허가신청 · <u>종합유원시설업</u> · <u>일반유원시설업</u> (6) <u>유원시설</u>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 <u>종합유원시설업</u> · <u>일반유원시설업</u> (7) <u>기타유원시설업</u> 신고 (8) <u>기타유원시설업</u> 신고사항 변경신고 (9) <u>유원시설업</u> 허가·신고증 재교부 신청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 5. (현행과 같음) 6. ----- (1) ~ (4) (현행과 같음) (5) <u>테마파크업</u> ----- · <u>종합테마파크업</u> · <u>일반테마파크업</u> (6) <u>테마파크</u> ----- · <u>종합테마파크업</u> · <u>일반테마파크업</u> (7) <u>기타테마파크업</u> ---- (8) <u>기타테마파크업</u> ----- (9) <u>테마파크업</u>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2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가 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제153조</u> ----- ----- ----- ----- ----- ----- -----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行政洞)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行政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2.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인 경우
 3.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08. 2. 29., 2010. 3. 15., 2021. 6.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9., 2019. 5. 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3. 5. 9.>

④ 삭제 <2023. 5. 9.>

[제2조에서 이동 <2021. 6. 15.>]